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1 - 13호

# 입 법 예 고 문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1년 4월 9일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

## 1. 자치법규 제명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

## 2. 개정이유

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, 신규 채용 위축 등 피해가 집중된 청년층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가. 청년 대상 활동비 지급 근거 조항 신설(안 제12조 제3항 및 제4항)

## 4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(참조: 의사팀장,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

(성산동), 전화: 3153-6171~6176, FAX:3153-6999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및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·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,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.

1.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·캠페인·프로그램 운영,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
2.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·방법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·시행
3.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제12조(청년의 참여 확대 등) ①·② (생 략) | 제12조(청년의 참여 확대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|
| <신 설> | ③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및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·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,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 |
| <신 설> | 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.<br>1.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·캠페인·프로그램 운영,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<br>2.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·방법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·시행<br>3.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|